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87호 2021. 3. 4.(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예천 군계획시설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1-19호)
- 예천 군계획시설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1-20호)
-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1-21호)

공 고

-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326호)
-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327호)
-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조 제2021-328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 군계획시설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1-6호(2021.1.21.)] 중 일부내용이 누락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 3. 4.

예 천 군 수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예천 도시지역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조서

(2) 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 장 (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지내리 구역계	청북리 구역계	한천	4,836	67,822	경고 2001-21 (2001.1.20)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지내리 구역계	청북리 구역계	한천	4,836	62,163	경고 2001-21 (2001.1.20)	미집행 구간의 실효

■ 철도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철도	- 철도 선형변경 - A=67,822㎡→62,163㎡, 감)5,659㎡	미집행 부분의 실효에 따른 선형 변경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관계도서는 예천군 도시과(☎ 054-650-63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예천 군계획시설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0-52호(2020.7.2.)] 중 일부내용이 누락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 3. 4.

예 천 군 수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용궁 도시지역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조서

(2) 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 장 (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금남리 구역계	산택리 구역계	읍부리	2,100	35,700	경고 95-187 (1995.10.31)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금남리 구역계	산택리 구역계	읍부리	2,100	40,050	경고 95-187 (1995.10.31)	미집행 구간의 실효

■ 철도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철도	- 철도 선형변경 및 구적오차정정 - A=35,700㎡→40,050㎡, 증)4,350㎡	미집행 부분의 실효에 따른 선형 변경 및 구적오차 정정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관계도서는 예천군 도시과(☎ 054-650-63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예천군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대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예 천 군 수

1. 지적측량수행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2. 사업지구 명칭 : 서본노상지구, 노상지구, 백전6지구, 마전2지구
3. 사업위치 및 면적
 - 서본노상지구 : 예천읍 서본리 7-5번지 일원 252필 68,848m²
 - 노상지구 : 예천읍 노상리 4-10번지 일원 216필 52,541m²
 - 백전6지구 : 예천읍 백전리 88-2번지 일원 201필 54,537m²
 - 마전2지구 : 지보면 마전리 139-2번지 일원 185필 80,038m²
4. 대행 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등
5.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054-650-6381, 6925, 69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 (안 제1조)
-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 (안 별표)
 - 현행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89
 - 개정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2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 (참조: 행정지원 실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 전화 : 054-650-6083, 팩스 : 054-650-6089
- 전자우편 : oneroad@korea.kr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
할구역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조·제4조 내지 제6조”를 “제3조, 제5조, 제9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u>예 천 군 청</u>	<u>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u>	예천군 일원
예천읍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2	예천읍 일원
용문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길 54	용문면 일원
효자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1481	효자면 일원
은풍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은풍로 88	은풍면 일원
감천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충효로 1389	감천면 일원
보문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127	보문면 일원
호명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오천길 2	호명면 일원
유천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예성로 699-8	유천면 일원
용궁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읍부1길 45	용궁면 일원
개포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길 28-8	개포면 일원
지보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26-5	지보면 일원
풍양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50	풍양면 일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4조 내지 제6조 및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예천군청과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제3조, 제5조, 제9조</u> ----- ----- ----- ----- ----- ----- -----.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예천군 종합민원과와 건축과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도청 신도시 활성화에 따라 늘어나는 부동산 및 건축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여 신속한 원스톱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안 별표)

○ 건축도시행정 ⇒ 건축행정 및 도시행정

○ 산림축산행정 ⇒ 산림녹지행정

나. 종합민원지적행정 위임사무 신설 (안 별표)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보증인의 위촉·해촉,

보증서 확인, 확인서 발급 및 공고, 접수 대장소관청 이첩

다. 건축분야의 세분화된 단위사무 통합 및 수임기관에 호명면 추가 (안 별표)

라. 건축행정 위임사무 중 융자금 징수 및 관리 삭제 (안 별표)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 (참조: 행정지원실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 전화 : 054-650-6083, 팩스 : 054-650-6089
- 전자우편 : oneroad@korea.kr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건	비 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 임 사 무 명 (권한위임)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총 무 행 정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연가, 병가, 공가, 특별 휴가의 처리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읍면
	2. 의회소속공무원 임용권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6급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상당계급승진)·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2.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3.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4. 전문경력관,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행정직군 속기·방호직렬공무원 및 기술직군 시설관리·위생 ·조리·간호조무·운전 직렬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한 의회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자치법제91조 지방자치법제91조 지방자치시행령제63조의2 및 별표 7의2	의회 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새마을 경 제 행 정	1. 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중 다음의 권한	1. 용자대상자 및 마을 조사 2. 용자대상자 및 마을 추천 3. 용자금회수 및 독촉 4. 사업 지도감독	예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 영관리조례 제4조, 제10조 같은 조례 제7조, 제14조 같은 조례 제8조, 제15조, 제17조 같은 조례 제9조, 제22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2. 공설시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시장사용허가 및 취소와 사용제한 2. 사용료부과·반환·감면 3. 사용자에 대한 설비 복구 및 기타사항	예천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제8조, 제9조 같은 조례 제12조, 제13조, 제14조 같은 조례 제19조	읍면 읍면 읍면
종합민원 지적행정	1.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 중 다 음의 권한	1.보증인의 위촉·해촉 2.보증인의 위촉·해촉 공고등 3.보증서·확인서 발급신청서 접수 대장소관청 이첩	같은법 제11조제2항	읍면
재 무 행 정	1. 군수입증지 조례중 다음 의 권한 2. 지방세기본법 중 다음의 권한 3. 지방세법 중 다음의 권한 4.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에 대한 다음의 권한 5. 지방재정법 중 다음의 권한 6. 군 물품관리 조례중 다음의 권한	1. 증지의 사용 1. 납세증명서 신청 및 발급 1. 건축물 실측 현지조사 2. 토지현황 조사 1. 해당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 외수입의 징수 결정 및 감 액 결정, 반환결정 1. 예정가격 3,000만원 이하의 공사 집행 2. 3,000만원 이하의 공사 착공 및 준공 검사 1. 불용품 매각처리	예천군수입증지조례 제4조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 지방재정법 제62조, 지방재정법 제91조 지방재정법 제67조 지방재정법 제67조 예천군물품관리조례 제17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건축행정	1. 건축법 중 다음의 권한	1.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 3. 공작물의 축조신고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예천읍 호명면 예천읍 호명면 예천읍 호명면
도시행정	3. 도시지역내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 2. 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 3. 변상금의 징수 및 원상회복	도로법제61조 도로법제66조 도로법제72조및제73조	읍면 읍면 읍면
주민복지 행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법률 중 다음의 권한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	1. 구호환자, 진료신청 2. 수급자 증명 3. 급여신청 1 .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 2. 무연고시체 등의 처리 3. 개인표지의 설치신고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주민복지 행정	3. 기초연금법에 관한 사항 중 다음의 권한	1. 기초연금의 지급신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6조	읍면
환경관리 행정	1.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 한 다음 권한	1.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 및 발생억제 추진	폐기물관리법 제4조	읍면
		2.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같은법 제6조	읍면
		3. 생활폐기물 투기자에 대한 조사 및 처분	같은 법 제8조제1항	읍면
		4. 생활폐기물 청결유지 명령	같은 법 제8조제3항	읍면
		5.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68조	읍면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을 위한 시책 시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제4조	읍면
	2. 하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하수도법 제39조	읍면
	3. 공중화장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및 폐쇄승인 신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읍면
산림복지 행정	1. 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입산신고	산림보호법 제15조	읍면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건설교통 행정	1. 군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 허가	도로법 제61조	읍면
		2. 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	같은 법 제66조	읍면
		3. 변상금의 징수 및 원상회복	같은 법 제72조 및 제73조	읍면
	2. 농·어촌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 허가	농업촌도로정비법 제18조	읍면
		2. 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	같은 법 제19조	읍면
		3.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20조	읍면
	3. 이륜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용신고, 변경신고 처리 폐지신고의 처리 및 번호 지정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면
		2. 번호판 부착과 봉인	같은 법 제49조	면
		3. 정비명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면
		4. 운행정지 명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면
		5. 이륜자동차의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면
		6. 이륜자동차의 준용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52조	면
안전재난 행정	1. 소하천정비법 중 다음의 권한	1.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읍면
		2. 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	같은 법 제22조	읍면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2020년 3차 및 4차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도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과 민원처리법과 달리 정한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기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없애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 삭제 (안 제16조)
- 민원처리법과 달리 정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기간에 대한 규정 삭제 (안 제2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 (참조: 행정지원 실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 전화 : 054-650-6083, 팩스 : 054-650-6089
- 전자우편 : ykmmktg@korea.kr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건	비 고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계약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u>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u> 1. ~ 5. (생략) ② ~ ⑤ (생략)	제16조(계약 체결 등) ① ----- ----- ----- ----- <u>체결하여야 한다.</u>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u>제22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삭 제></u>

④ 군수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3항에 따른 통지에 포함시켜야 한다.